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10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리며, 제1-10조(특약의 무효) 제2항을 따릅니다.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1조의3("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간편심사형]

지급금액		
성가입금액의 1% 초계약의 계약일부 기만에 지급사유가 I우 "특약보험가입 5%"를 지급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0.3%"를 지급함)		
변함가입금액의 0.6% 초계약의 계약일 현 미만에 지급사 행한 경우 "특약보 액의 0.3%"를		

※ 1년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4. 통원급여금의 경우 지급횟수는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심사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 치료 통원급 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또는 비침습	암, 대장점막내 암 또는 비침습방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0.5%"를 지급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일 1회에 한 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3%"를 지급함)	

- ※ 1년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4. 통원급여금의 경우 지급횟수는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표2-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5-1] 참조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6-1] 참조

부표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별첨2 [표 7] 참조

(간편)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1조의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6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1조의 7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 및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제2-1조의8 "다빈치로봇수술"의 정의

제2-1조의9 보장계약 등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제2-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2-3] 전립선암 분류표

(간편)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무배당, 갱신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 이 특약은 제2-1조의9(보장계약 등의 정의)에서 정한 총2개의 보장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약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계약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된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편 개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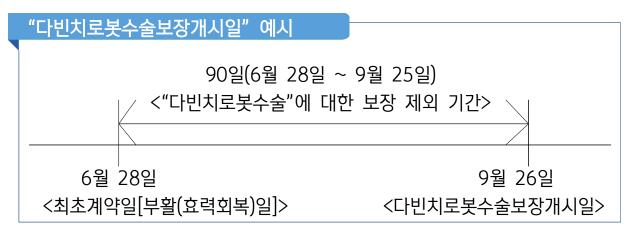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2-8조의2["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은 아래 질

병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1. 제2-1조의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2.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3.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로 합니다.
- ② 제1-9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1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하며, 갱신 시점의 유효한 보장계약을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 보장계약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장계약이 소멸된 경우 해당 보장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2-9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①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주)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 산출기초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 ⑧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⑨ 갱신계약의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4.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부표 2-3> "전립선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의한 "암"에서 제2항에서 정의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다만,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 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①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 을 제외한 암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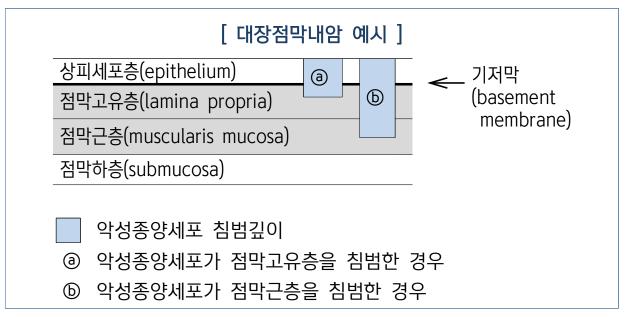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 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 ~ 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유두암 (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 8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비침습방광암 예시]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점막층(lamina propria) 전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침습방 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 다.
- ③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하며, 이 경우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

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방광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6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 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제2-1조의7("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직접적인 항암약물

치료" 및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정한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와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는 제외합니다.

제2-1조의7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 및 "전립선 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1조의8 "다빈치로봇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다빈치로봇수술"이라 함은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빈치로봇수술 분류표>

분류항목	수 가 코 드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07061
- 다빈치 기기da Vinci①	QZ961

- ② 제1항의 "다빈치로봇수술"은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3.1. 시행)」에서 정한 수가코드 기준을따르며, 이 특약 체결 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기록지상 다빈치 (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 빈치로봇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빈치로봇수술

다빈치로봇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 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 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다빈치(da Vinci)기기

다빈치 기기(da Vinci)란 환자의 몸 안에 삽입되는 로봇을 말하며 집 도의의 원격 조정에 의해 시술자의 손처럼 움직여서 수술을 수행하는 수술 로봇을 말합니다.

제2-1조의9 보장계약 등의 정의

이 특약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장종류에 따라 "(갑 상선암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각 보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하며,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각 보장계약을 합하여 "특약"이라 합니다)

1. (갑상선암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을 보장 받기 위한 계약
- 2.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을 보장 받기 위한 계약
- ※ 각 보장계약별 보장내용, 유지, 감액 등이 다르므로 각 조항을 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갑상선암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갑상선암 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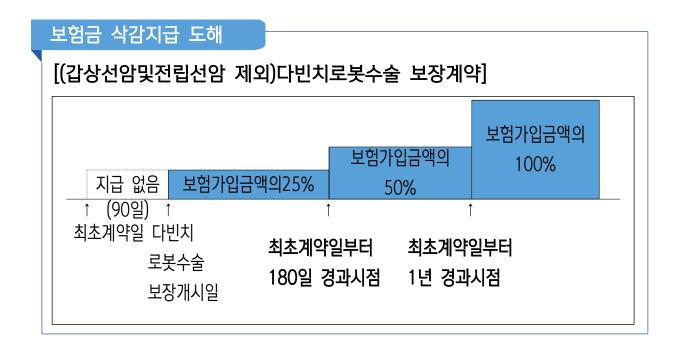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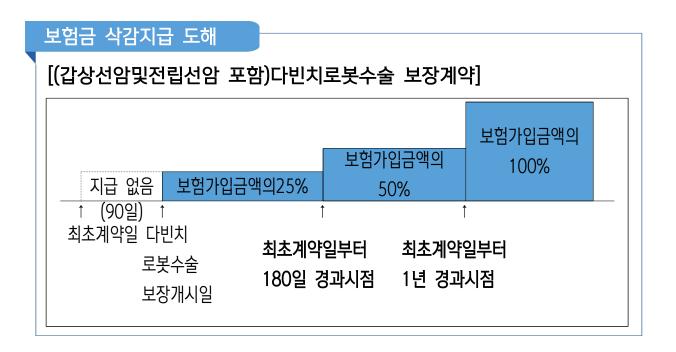
다.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각 보장계약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다음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삭감기간	지급비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91일 이상 180일 이내	25%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81일 이상 1년 미만	50%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2-5조 사고증명서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행위코드

(EDI)' 필수 기재],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각 보장계약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각 보장계약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이 없을 수도 있으며, 감액 이후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 당시에 안내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 (= 400	만원 - 200만원)

제2-8조의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 부터 제5항을 따르며,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는 모든 보장계약(다만, 각 보장계약에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보 장계약은 제외)에 대해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해야 합니다.

제2-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 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이 특약의 일부 보장계약에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장계약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각 보장계약에 한하여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특약보험기간 중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 보장계약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계산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2-9조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10조(특약의 무효)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아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 1. 제2-1조의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2.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3.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특정 보장계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 ※ 91일 이상 180일 이내 : 최초계약의 계약일이후 91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 ※ 181일 이상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이후 181일이 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이 되는 날까지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또는「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 약의 피보험자에게 특약보험기간 중 각 보장계약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보장계약에 한하여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이 특약의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하며,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라 함은 "암" 중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갑상선암및전립선암 제외)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다빈치로봇수술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91일 이상 180일 이내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81일 이상 1년 미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갱신계약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및전립선암 포함)다빈치로봇수술 보장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포함) 다빈치로봇수술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다빈치로봇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전립선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91일 이상 180일 이내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81일 이상 1년 미만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부표2-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별첨2 [표 5-1] 참조

부표2-3

전립선암 분류표



별첨2 [표 8-2] 참조

(간편)암수술특약 (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1조의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1조의8 "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1조의9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 및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

[부표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간편)암수술특약 (무배당, 갱신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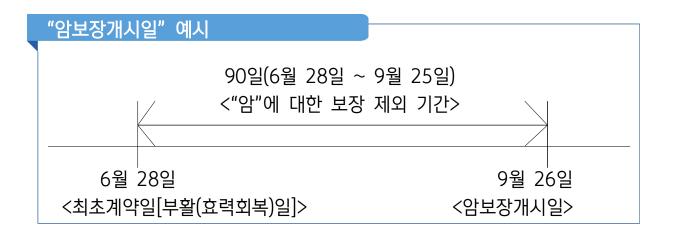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합니다.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또는 2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만기의 경우 10년", "20년만기의 경우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9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1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2-9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 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2-1조의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1.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2.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 3.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

내암

- 4.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 광암
- 5.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코드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다만,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ဝ

악성신생물(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을 기준으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여부 및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

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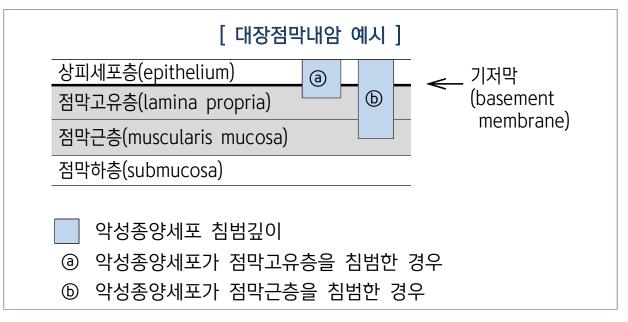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 정된 것으로 봅니다.
-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단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4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 ~ 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 에서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 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 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 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5 "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방광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 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 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유두암 (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 [AJCC(Ame 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 8판"에서 정한 병기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비침습방광암 예시]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그 점막층
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하층(submucosa)	_
근육층(muscle)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한 경우	

- ② 제1항의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우에는 "비침습방 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 다.
- ③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하며, 이 경우 "비침습방광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비침습방광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부표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방광암 제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만, 제2-1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및 제2-1조의5("비침습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방광암"은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

암(종)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 상피란 신체의 내부나 외부를 싸고 있 는 조직을 말함.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부표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의8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

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 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서 제2-1조의9("'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 및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와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보기로"와 "도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2-1조의9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 및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 1.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수술1회당)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수술1회당)
- 3.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수술1회당)

[일반심사형]의 경우

- 1.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방광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 1회당)
-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특약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